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희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대규모 점포, 일정규모 이상의 도·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나 쇼핑백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현수막 발생도 2016년 기준 연간 약 77만장에 달하고 있지만, 재활용은 약 30%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현수막 등으로 제작한 장바구니 등을 확대 보급할 필요

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재활용 장바구니 등의 보급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오타 등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